

문서번호	WS-QP-0428(rev. 1)
제정일자	2023.01.01
개정일자	
페이지	1 / 4

담당자	승인자
실무자	책임자

### 개정 이력

차 수	제(개)정 일자	시행 일자	주요 개정 내용
1	2023.01.01	2023.01.01	

 <b>인권경영규정(인권헌장)</b>	문서번호	WS-QP-0428(rev. 1)
	제정일자	2023.01.01
	개정일자	0
	페이지	2 / 4

## 제 1 장 총 칙

1. **(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우수정기주식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3. **(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제 2 장 인권경영 규정

### 1. (차별금지)

- ①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가족관계(혼인유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 2. (근로조건 준수)

- ①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3. (인도적 대우)

- ①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b>인권경영규정(인권헌장)</b>	문서번호	WS-QP-0428(rev. 1)
	제정일자	2023.01.01
	개정일자	0
	페이지	3 / 4

- ③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 4.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①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 5. (노동자의 권리 보장)

- ①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②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6. (산업·안전보건 보장)

- ①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②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 7. (고객의 인권 보호)

- ①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 의 자유를 보호한다.

#### 9. (수출제한 국가간 거래금지)

- ① 회사는 제재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인물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제재법을 준수한다.

	<b>인권경영규정(인권헌장)</b>	문서번호	WS-QP-0428(rev. 1)
		제정일자	2023.01.01
		개정일자	0
		페이지	4 / 4

## 10. (고충처리 절차 운영)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인도적 대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접수 및 신고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woosupm.com](http://www.woosupm.com) / **전화:**070-7490-1275/**이메일:** / **팩스:**052-262-1847

### ①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우수정기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원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신고접수시 개별 신고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원침해 신고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 ② 인원침해 신고처리

우수정기는 인권침해 신고사례 등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처리 관행, 기타 업계관행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성의 구제방안을 모색한다.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이나 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실무회의 등에서 구제방안 논의할 수 있다.

### ③ 신고인의 신고보장

우수정기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11. (교육 및 확산)

### ① 인권경영 교육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인권경영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임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인권경영 확산

인권헌장 및 실행계획, 인권 리스크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우수정기 내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